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물품대금

원 고 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변 론 종 결 [redacted]

[redacted]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4,170,24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는
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

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화해권고결정

사 건 [redacted] 물품대금

원고, 피항소인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

[redacted]

피고, 항소인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정사항

1. 피고는 [redacted]까지 원고에게 30,000,000원을 지급하되, 만약 이를 지체하면 그에 갈음하여 36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지급일까지 연 5%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.

2. 피고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마치면, 원고는 [redacted]

■ 각 채권가압류의 가압류신청들을 모두 취하하고 그 집행
을 해제한다(피고에 의한 이 결정 및 그 확정증명과 제1항에 따른 지급증빙의 제출
로써 원고의 위 각 의사표시에 갈음한다).

3. 피고는 원고가 제2항 기재 사건들의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들(위 법원 ■
■ 14,000,000원, ■ 6,000,000원, ■ 2,000,000
원)을 회수함에 있어 이에 동의하고 각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(원
고에 의한 이 결정 및 그 확정증명의 제출로써 피고의 위 각 의사표시에 갈음한다).
4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5.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